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3년 10월 4일

나. 청 원 자 : 1,220명[대표 : 여귀환(임은동)]

다. 회부일자 : 2013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0월 10일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김 수 민 의원

나. 청원내용

- 현재, 관내 주거지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트럭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가운데 트럭을 주차할 적합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주차로 인한 주민들과 화물노동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구미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을 요구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용 우

□ 본 청원의 건은,

- 주거지에 대형화물트럭의 주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구미 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IC인근 화물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건으로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용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차고지와 주거지와의 원거리상 주거지 주변 도로에 편의상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남구미 IC입구 구미화물터미널에 237면이 설치되어 있고, 구포동에 시행 중인 공동차고지에 106면이 설치될 예정임.
- 관내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2,385대, 자가용 24,857대가 등록되어 있음
- 도시계획상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미비로 인한 주거지내 주차만연 및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한 물류, 유통기능이 필요하다는 장기 구상이 되어 있으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는,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 수송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운송사업자 주차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공영차고지”의 입지여건, 산업단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할 사항이므로,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붙임 : 의견서 1부.